

## 추가 고발

은평구청 안산옥을 임상현의 공범 및 [형법] 제 151 조(범인 은닉)으로 고발한다

### 1. [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3 도 4533]

[형법] 제 151 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,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,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, 형법 제 151 조 제 1 항의 이른바, '죄를 범한 자'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,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, 한편,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 155 조 제 1 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.

### 2. 안산옥의 피의사실은 안산옥의 비리신고로(자료 2) 대신한다

첨부자료

1. 임상현 비리 신고에 대한 안산옥의 답변
2. 국토부에 안산옥에 대한 비리 신고